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공 항 시 설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민간항공기구의 항공안전평가에 대비하여 국제기준에 맞게 공항 안전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항운영증명에 대한 유효성 검사 제도를 신설하고, 대체안전수단을 인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항시설법이 개정('26.6.16)됨에 따라, 유효성 검사 시행 및 대체안전수단 인정에 필요한 세부 절차 등을 마련하는 한편,

국민이 이용하는 모든 공항이 공항운영증명을 받도록 공항운영증명의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항시설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 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 중 “인천·김포·김해·제주·청주·무안·양양·대구·광주공항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을 “「항공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신공항의 경우에는 법 제4조에 따른 공항개발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항공 수요전망을 기준으로 공항운영증명을 신청한 연도로부터 5년 평균 연간 운항횟수를 적용한다.

제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2(대체안전수단의 인정 등) ① 법 제55조의2제1항에 따라 대체안전수단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체안전수단의 필요성
2. 대체안전수단의 내용
3. 대체안전수단의 적용 범위 및 기간
4. 대체안전수단 인정에 따른 위험도 평가 결과
5. 대체안전수단 인정에 따른 위험도 경감 조치 계획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5조의2제2항에 따라 대체안전수단의 인정 여부를 심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대체안전수단의 필요성
2. 대체안전수단의 타당성
3. 대체안전수단의 적용 범위 및 기간의 적절성
4. 위험도 평가 절차·방법의 적절성 및 그 결과의 수용가능성
5. 위험도 경감 조치 계획의 효과성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신청인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신청인, 「항공안전법」 제132조제2항에 따른 항공안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체안전수단의 인정 등에 관한 심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법 제55조의2제4항에 따른 정기검사는 연 1회 실시하되, 필요하면 수시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대체안전수단 인정의 신청,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5조제1항에 제6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6호 중 “과태료 및 법 제69조제1항제3호”를 “과태료, 법 제69조제1항제3호 및 제7호”로 한다.

61의2. 법 제55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검사 및 시정조치 명령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항운영증명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항운영증명을 받아야 하는 자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공항운영증명을 신청하여야 한다.

공항운영자에 대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제52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및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공중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및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공항의 운항횟수별 과징금의 금액				
		8만회 이상	4만회 이상 8만회 미만	2만회 이상 4만회 미만	5천회 이상 2만회 미만	5천회 미만
가. 「항공안전법」 제58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사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법 제41조 제1항제2호	3,000	2,000	1,000	600	400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2) 승인을 받지 않고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운용한 경우 3)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운용한 경우 4) 승인을 받지 않고 안전목표·안전조직 및 안전장애보고체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나.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유효성 검사 후 보완조치를 명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또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완 또는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 이동지역 유지·보수에 관한 보완 또는 시정조치 나) 시각보조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보완 또는 시정조치 다) 이동지역 작업 통제 또	법 제41조제1항제2호의3 및 제3호	5,000	2,500	1,500	800	500
---	-----------------------------	-------	-------	-------	-----	-----

는 차량·장비 통제에 관한 보완 또는 시정조치					
라) 장애물 통제기준에 관한 보완 또는 시정조치					
마) 위험물의 취급과 저장에 관한 보완 또는 시정조치					
바) 항공기 구조 및 소방에 관한 보완 또는 시정조치					
2) 그 밖의 보완 또는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500	1,000	800	400	250
다.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위반하여 공항안전에 위험을 초래한 경우	3,000	1,500	1,000	500	300
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항공기사고가 발생하거나 공항종사자를 관리·감독하는 상당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항공기사고가 발생한 경우	법 제41조 제1항제4호				
1)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200명 이상인 경우	100,000	50,000	30,000	15,000	10,000
2)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50명 이상 200명 미만인 경우	80,000	40,000	20,000	10,000	8,000
3)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00명 이상 150명	50,000	25,000	15,000	8,000	5,000

미만인 경우						
4)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50명 이상 100명 미만인 경우		30,000	15,000	10,000	5,000	3,000
5)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0명 이상 50명 미만인 경우		15,000	10,000	5,000	3,000	1,500
6)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0명 미만인 경우		10,000	5,000	3,000	1,500	1,000
7)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항공기 또는 공항시설의 피해가 100억원 이상인 경우		10,000	5,000	3,000	1,500	1,000
8)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항공기 또는 공항시설의 피해가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		8,000	4,000	2,000	1,000	800
9)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항공기 또는 공항시설의 피해가 50억원 미만인 경우		5,000	2,500	1,500	800	500

비고

1. 공항의 운항횟수는 과징금 부과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총운항횟수(국내노선을 운항하는 항공기의 착륙 횟수에 0.25를 곱한 후 국제노선을 운항하는 항공기의 착륙 횟수를 합한 횟수를 말한다. 이 경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용 항공기의 착륙 횟수는 제외한다)에 따라 구분하되, 공항의 신규 운영 등으로 인하여 공항의 운영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 경우와 최근 1년간 총운항횟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기별·월별 또는 일별 운

항횡수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2. 위 표의 라목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인명피해와 항공기 또는 공항시설의 피해가 같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합산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되, 합산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3. 위 표의 라목1)부터 6)까지를 적용하는 경우 중상자 2명을 사망자 1명으로 보되,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7조(공항운영증명을 받아야 하는 공항 등) ① 법 제38조제1항에서 “국제항공노선이 있는 공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항”이란 <u>인천·김포·김해·제주·청주·무안·양양·대구·광주공항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u> 공항을 말한다.	제47조(공항운영증명을 받아야 하는 공항 등) ① ----- ----- ----- ----- 「항공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등급으로 구분하여 같은 조제1항에 따른 공항운영증명(이하 “공항운영증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 ----- ----- ----- -----.
1. 1등급: 「항공사업법」 제2조제9호 및 제11호에 따른 국내 항공운송사업 및 국제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고 최근 5년 평균 연간 운항횟수가 3만회 이상인 공항(부정기편만 운항하는 공항은 제외한다)에 대한 공항운영증명	1. ----- ----- ----- ----- ----- ----- ----- 다만, <u>신공항</u> 의 경우에는 법 제4조에 따른

2. 2등급: 「항공사업법」 제2조 제9호 및 제11호에 따른 국내 항공운송사업 및 국제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고 최근 5년 평균 연간 운항횟수가 3만회 미만인 공항(부정기편만 운항하는 공항은 제외한다)에 대한 공항운영증명

3. · 4. (생략)
 <신설>

공항개발 기본계획에서 제시
된 항공 수요전망을 기준으로
공항운영증명을 신청한 연도
로부터 5년 평균 연간 운항횟
수를 적용한다.

2. -----

-----. 다만, 신공항의 경우에는 법 제4조에 따른 공항개발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항공 수요전망을 기준으로 공항운영증명을 신청한 연도로부터 5년 평균 연간 운항횟수를 적용한다.

3. 4. (현행과 같음)

제49조의2(대체안전수단의 인정 등) ① 법 제55조의2제1항에 따라 대체안전수단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체안전수단의 필요성
 2. 대체안전수단의 내용
 3. 대체안전수단의 적용 범위
및 기간
 4. 대체안전수단 인정에 따른
위험도 평가 결과
 5. 대체안전수단 인정에 따른
위험도 경감 조치 계획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5조
의2제2항에 따라 대체안전수단
의 인정 여부를 심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야 한다.
1. 대체안전수단의 필요성
 2. 대체안전수단의 타당성
 3. 대체안전수단의 적용 범위
및 기간의 적절성
 4. 위험도 평가 절차·방법의 적
절성 및 그 결과의 수용가능
성
 5. 위험도 경감 조치 계획의 효
과성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신청인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은 특별한 사유

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신청인, 「항공안전법」 제132조제2항에 따른 항공안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체안전수단의 인정 등에 관한 심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법 제55조의2제4항에 따른 정기검사는 연 1회 실시하되, 필요하면 수시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대체안전수단 인정의 신청,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5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국

제55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

-----.

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시행하는 것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개발사업과 관련된 제1호, 제3호, 제6호부터 제21호까지, 제23호부터 제25호까지, 제30호, 제32호 및 제33호의 권한은 제외한다. 1. ~ 61. (생략) <u><신설></u> 62. ~ 65. (생략) 66. 법 제6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지방항공청장에게 권한이 위임된 사항에 관한 과태료 및 법 제6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 징수만 해당한다) 67. (생략) ② ~ ④ (생략)	----- ----- ----- ----- ----- -----. 1. ~ 61. (현행과 같음) <u>61의2 법 제55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검사 및 시정조치 명령</u> 62. ~ 65. (현행과 같음) 66. ----- -- <u>과태료, 법 제69조제1항제3호 및 제7호</u>----- -- 67.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	---